

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0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평생교육법」에 부합하도록 노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,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반을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 정의에 “문해교육”, “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”, “평생교육이용권” 추가(안 제2조제1호)
-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설(안 제4조제5항 신설)
-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자격 변경(안 제7조제3항제2호)

-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을 의무화(안 제13조제1항)
- 평생학습관 사업에 노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사업 추가(안 제13조제2항)
-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·운영을 의무화(안 제14조제1항)
-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추가(안 제15조 신설)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제5호, 제8조제2항, 제20조제3항, 제22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2조제1호에서는 평생교육 정의에 “문해교육”, “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”, “평생교육이용권”을 추가하고
 - 안 제4조제5항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신설함.
 - 안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자격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고
 -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
 -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평생학습관 사업에 노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성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사업을 추가함.

-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·운영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의무화하고
- 안 제15조에서는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을 추가함.
- 100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습이 전 생애로 확대되고, 디지털 전환, 고령화, 직업 재교육 수요 증가 등으로 평생학습의 영역과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,
- 지역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과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여, 개정안에서는 평생교육권이용권 지원, 평생학습관 사업 추가,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,
-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